



□ 제5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※ 제4호 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선임될 사외이사 수가 변동되므로, 반드시 아래 2개 안 (제5-1호, 제5-2호) 모두 표기

I) 제5-1호( '제4-1호' 안이 가결된 경우) :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

※ 아래 3명의 후보 중 1명 선임(찬성하는 후보 1명에 대하여만 표기)

후보자 성명	추천인	기 표
백종수	KT&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
오철호	중소기업은행 (주주제안)	
황덕희	중소기업은행 (주주제안)	

-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후보자별 순차 표결을 진행하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, 2명 이상의 후보에 표기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됩니다.

II) 제5-2호( '제4-2호' 안이 가결될 경우) :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

※ 아래 4명의 후보 중 3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

후보자 성명	추천인	기 표
백종수	KT&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
정선일	KT&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
오철호	중소기업은행 (주주제안)	
황덕희	중소기업은행 (주주제안)	

- 본인의 총 의결권(위임할 주식수× 3)을 본인이 위 기표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분산 또는 집중하여 찬성 투표하는 것을 위 대리인 중 1명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. 다만 위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총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집중 또는 분산하여 구체적 수치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.

□ 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찬 성	반 대

6. 기타 사항(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및 집중투표 청구의 철회 등)

- 각호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, 절차진행에 대한 동의안 또는 위 찬부 표시와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상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 “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” 에서 표시한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제5호 의안 중 제5-2호안이 집중투표 청구의 철회 등에 의하여 집중투표 방식에 따라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, 기표가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결권을, 기표가 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이와 다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아래에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.

항 목	지시내용

7. 중복위임장의 처리

본인이 위 위임장 작성 이전에 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의 의사는 본 위임장의 제출로 철회하며, 본 위임장이 본인의 최종적인 위임의 본 지임을 확인합니다.

※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

- 각 의안에 대한 찬성, 반대 표시 란의 경우 찬성 또는 반대의 한 곳에만 표시하시고, 제 4호 의안은 반드시 제4-1호, 제4-2호 중 한 곳에만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제5호 의안의 경우에는 제5-1호, 제5-2호 모두 표기해 주시길 바라며, 특히 제5-1호 의안의 경우 후보자 1인에 대하여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위임장에 하는 표시 또는 기표는 해당 란에 ○, ✓, × 등의 적절한 1가지 방식으로 하여,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백지위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5호(사외이사 선임의 건)과 관련하여 제4호(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)에서 제4-2호(사외이사 8명으로 증원의 건) 안이 가결되어 제5-2호(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)로 투표할 경우 집중투표라 함은 복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, 총 의결권(위임할 주식수× 3)을 각 후보자에게 분산 또는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위 본인(주주) : (인)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 2018년 월 일 시

**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귀중**